

인권 경영 정책



제1조 목적

주식회사 트리니티항공(이하 "트리니티항공")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, 사업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인권 경영정책을 제정한다.

트리니티항공은 세계인권선언(UDHR), 국제노동기구(ILO) 핵심협약,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 기준을 지지하며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
제2조 적용범위

본 정책은 트리니티항공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협력사, 공급망, 고객,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정책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.

제3조 인권경영 기본원칙

트리니티항공은 다음의 인권 원칙을 준수한다.

① 인도적 대우

회사는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, 폭언, 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한다.

② 차별 금지

회사는 성별, 연령, 국적, 인종, 종교, 장애, 임신, 혼인 여부,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③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

회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.

④ 노동권 보장

회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존중한다.

⑤ 안전보건 보장

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.

⑥ 고객 인권 보호

고객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장애인,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존중한다.

⑦ 지역사회 및 공급망 인권 존중

사업활동이 지역사회와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공급망 내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.

제4조 인권 위험 실사

트리니티항공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 위험 실사를 실시한다.

① 위험 식별

회사는 임직원, 협력사,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인권 위험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임직원 만족도 조사, 고충처리 제도, 산업안전보건 점검, 현장 운영점검, 협력사 관리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.

② 위험 평가

회사는 식별된 인권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검토하여 우선 관리가 필요한 인권 이슈를 선정한다.

③ 개선조치

회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, 교육 실시, 근무환경 개선, 고충처리 지원 등 적절한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수립·이행한다.

④ 모니터링

회사는 개선조치의 이행 현황과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, 필요한 경우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.

⑤ 이해관계자 참여

회사는 임직원, 협력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 위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

⑥ 운영체계

HRD 부서는 인권경영 정책의 운영 및 인권 위험 실사 업무를 총괄하며,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인권 위험요인 식별, 개선조치 수립 및 이행현황을 관리한다.

제5조 주요 인권 위험요인

트리니티항공은 다음과 같은 인권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한다.

- ① 차별 및 괴롭힘
- ② 직장 내 성희롱
- ③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
- ④ 산업안전 및 보건
- ⑤ 개인정보 보호
- ⑥ 고객 안전 및 권익 보호
- ⑦ 협력사 노동환경 및 인권
- ⑧ 다양성 및 동등한 기회 보장

제6조 고충처리 및 구제

트리니티항공은 인권 침해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한다.

접수된 신고는 사실조사, 심의 및 조치, 재발방지 대책 수립 과정을 거쳐 처리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.

제7조 교육 및 내재화

트리니티항공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.

제8조 정책 공개 및 개정

본 정책은 트리니티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관련 법령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·개정한다.